

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3. . . .
제출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별표 27 기호(■)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하고 '건축물 용도에 맞게 목적대로'의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여 조례상에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별표 27 기호(■)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구체적 기준 명시
'가'목에 추가된 '우사를 제외한' 조문 삭제
 - 당 초 : 3. 제2호 나목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건축물 용도에 맞게 목적대로 사용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.
가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의 우사를 제외한 축사
 - 변 경 : 3. 제2호 나목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건축물 용도에 맞게 목적대로 50/100 이상 사용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.
가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의 축사

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호 중 “건축물 용도”를 “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건축물 용도”로,
“사용하면서”를 “50/100 이상 사용하면서”로 한다

공작물(발전시설)에 대한 허가기준

(제22조제3항 관련)

■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

1.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·지구·구역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.
 - 가. 주요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
 - 나.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할 수 없으며, 10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 300미터 거리 이격 후 주택수에 20미터를 곱한 거리를 추가 이격할 것
 - 다. 관광지,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입지하지 못함
 - 라. 저수지의 자연경관 및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
 - 마. 자연의 보존, 문화재,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, 지역의 역사성 및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는 입지할 수 없음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, 통풍,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.
 - 가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
 - 나.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는 건축물 위 또는 조성이 완료된 대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
 - 다. 개인 또는 법인의 소유시설물에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
 - 라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3. 제2호 나목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건축물 용도에 맞게 목적대로 50/100 이상 사용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.

- 가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의 축사
 - 나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 마목의 작물 재배사
 - 다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 아목의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
4. 풍력발전시설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가. 주요교통시설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,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
 - 나.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가축사육시설로부터 1,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

■ 발전시설 허가기준 완화

지역 여건이나 사업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전시설 입지예정지의 지형지세등을 감안하여 주요도로,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분의 1 범위 내에서 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」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다.

■ 용어의 정의 : 별표 27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요도로”란 「도로법」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, 일반국도, 지방도, 시도,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「철도건설법」 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, 광역철도, 일반철도를 말한다.
2. “자연취락지구”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.
3. “주거밀집지역”이란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한 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.
4. “관광지”란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를 말한다.
5. “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”이란 법 제4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중 관광휴양형으로 정해진 지역을 말한다.
6. “저수지”란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5호 마목의 저수지를 말한다.
7. “발전시설”이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

법」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·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「건축법」 제2조에 따른 건축설비는 제외한다.

8. “조성이 완료된 대지”란 절토나 성토행위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지목이 대지·공장용지·학교용지·주차장·주유소용지·창고용지인 토지를 말한다.